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885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이해민 · 이훈기 · 김재원
김우영 · 이학영 · 김한규
이정현 · 차규근 · 김준형
강경숙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광고를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매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규정과 광고 현실 간의 괴리가 큼.

또한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심사 권한을 이해당사자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 수준이 업계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고, 새로운 법률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3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를 “법무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를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잡지
3. 온라인 법률 플랫폼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 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u>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u> 광고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1357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광고) ① -----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1. 「<u>방송법</u>」 제2조제1호의 방송 <u>술</u> 2. 「<u>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의 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u>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가 <u>목의 잡지</u> 3. 온라인 법률 플랫폼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u>매체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u>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u>대한변호사협회가</u>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u>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u>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u>광고심사위원회의</u>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한변호사협회가</u> 정한다.	<u>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u>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u>대통령령으로</u>----- ③ ----- -----<u>법무부에</u>----- -----. ⑤ <u>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변호사등의 광고의 구체적인 방법·내용,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u>----- -----<u>대통령령으로</u>-----.
---	---